

논문심사 규정

제1조 규정은 논문지에 게재할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검토한 후 심사진행여부를 결정하고, 그 진행조건이 미비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

제3조 심사진행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각 논문 편당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이 제출한 논문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위원이 제출한 논문에 대하여는 해당위원은 해당논문의 심사위촉 결정과정에 참여 할 수 없다.

제5조 심사자는 심사위촉 후 14일(긴급논문 7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으로부터 질의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주선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채택이 부결된 논문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지체없이 투고자에게 반려 한다.

제8조 심사에서는 논문제출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며 논문심사 위촉에 관한 회의상황은 일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7년 5월13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6년 11월 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2년 9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